

경제관계장관회의

25-10-3

(공개)

공공조달 개혁방안

2025. 11. 19.

관계부처합동

조달체계 재설계 및 전략조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 (요약)

I 배경 및 경과

- **(배경)** 조달청의 중앙조달은 '투명·청렴·전문성' 면에서 신뢰를 받고 있으나,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
 - 또한, 혁신조달·사회적 책임조달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전략조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
- **(의견수렴·부처협업)** 조달 개혁방안에 대한 국가·지방정부, 업종별 협·단체,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의견 수렴
 - * 140여개 지방정부 조달부서장 의견청취, 중기중앙회 등 관련 협회 간담회 등 (300여 기업)
 - 개혁방향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(7.8.) 이후, 개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

II 개혁방안

목표 공공조달체계 재설계 + 전략조달 강화

➡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등 4개 분야 70개 조달개혁과제 추진

① 조달 자율성 확대 ② 경쟁강화+가격·품질 관리 ③ 신산업 성장지원 ④ 사회적 책임 조달

1.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

- **(자율화)**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 하되,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확대 추진
 - **(1단계:시범실시)**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(26)
 - * 전체 지방정부 수요조사 및 수도권/비수도권 균형 등 고려 → 경기도, 전북도 선정
 - 지방정부 구매 비중, 가격 변동성, 중기간 경쟁 대상 등 고려 → 전자제품 120개 품목
 - **(2단계:확대)**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·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(27)

□ **(부작용 방지)** 부정부패, 약자기업 지원 약화 등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

○ **(부패·불공정 차단)** 자체조달에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방지 방안 시행

-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·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·개선을 권고 (「전자조달법」 개정)
- 허위 원산지,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 권한을 신고조사 → 직권조사까지 확대(「조달사업법」 개정)

-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 입찰·계약 비리 적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*' 적용

* 지방정부 자율 구매 권한을 회수하여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 강제

-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의 '나라장터'를 통한 전면 공개*

* 지방정부별 수의계약 등 주요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상시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정 유도

○ **(정책지원 유지)**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시장에서 약자기업(중소·여성·장애인 등)의 공공구매실적 유지 노력

-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중소·여성·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율화 허용

* (예시) 해당 지방정부의 기존 5년간 평균 약자기업 구매 비율의 95% 이상 유지 조건

- 시범실시 기간 중 지방정부의 약자기업 구매 경향을 분석하여 전체 확대 시 약자기업 구매비율 준수 방안 추가 검토

- 자체조달 시에도 약자기업 우선 구매 등 조달 기본원칙을 법제화 하는 「공공조달법」 제정 추진

* 조달청의 중앙조달 시에는 사회적 책임 조달을 「조달사업법」 제6조에 명기

-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중소·여성·장애인기업 등의 제품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상황을 정기 공표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

2. 경쟁 확대 및 가격·품질 관리 강화

- **(경쟁확대)**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제도를 보완하고, 과도한 수주쏙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*
 - *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추가 경쟁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, 과점 품목은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등 조달시장 구조를 개선
- **(가격관리)** 조달 가격의 투명성·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증*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**도 병행
 - * 민간거래 규격 중심으로 규격 정비, 가격 증빙이 미흡한 품목은 단가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총액계약으로 전환 등
 - **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신속 반영 (단품 물가조정제 확대, 구매실례가격에 물가상승분 반영 등)
- **(품질관리)** 조달물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, 입찰 시 고품질 제품 우대
 - * 품질점검 대상 확대 (275개 안전물자→1,570개 단가계약 전체품명), 엄격한 품질 점검과 심사를 통과한 '품질보증조달물품' 우대 강화

3.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

- **(혁신조달)**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'혁신제품 공공구매' 대폭 확대
 - *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'30년까지 누적 5,000개 발굴 ('24년 2,280개) /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'30년까지 2.5조원+α 까지 확대 ('24년 1조원)
- **(혁신기업 스케일업)** 혁신기업의 양적·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실증('25년 140억원→'26년 200억원)과 R&D('25년 30억원→'26년 100억원) 기회 확대
 - *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확대로 초기 수출기회 제공 / 혁신제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R&D 지원 / 혁신조달 수과정을 통합지원하는 '혁신제품 지원센터' 기능 강화 등
- **(AI육성)** 정부가 AI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
 - * AI 적용 제품의 조달쇼핑몰 등록 확대 / AI 적용 제품서비스 구매 면책제도 도입 / AI 전문 평가제 등 AI 기술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운영
- **(조달행정AX)**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 선도
 - * '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' → 가격조사, 공사원가 검토, 평가 등 조달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

4. 조달의 사회적 책임 구현

- **(사회적 가치)** 조달을 통한 탄소 중립, 고용안정 등 사회적 가치 구현
 - **(탄소중립)**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① 기후테크·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, ② 녹색구매 기반 강화, ③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등 선도
 - * 기후테크·저탄소 스타트업 발굴·우대 / 입찰평가 시 '저탄소제품인증'과 '환경표지인증' 반영 /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기준 마련
 - **(사회적 연대경제)**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좋은 일자리 확산, 사회적 연대경제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조달 실현
 - * 입찰 평가시 '행복한 일터(일자리)' 인증 기업, 일생활 균형 경영평가지표 반영 /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 판로지원 / 사회적기업진흥원의 "가치장터"를 나라장터 연계 등
- **(국민안전)**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
 - **(제재강화)**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제한 강화*
 - * 입찰참가 금지조치 확대 /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만 입찰을 허용하는 제한경쟁 신설 / 낙찰자 선정 시 중대재해 발생여부 반영 / '건설안전' 평가가점제 → 배점제로 전환
 - **(안전관리)** 조달 전(全)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* 및 안전투자 유도**
 - * 안전관리 전문위원회 신설 / 안전 문제시 공사정지요구권 보장 / 화재 대비 설계 가이드라인 보급
 - ** 조달기업이 안전분야에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→적정 계약대금 보장

III 향후 계획

- **(자율화)** 경기도, 전북도 시작으로 단가계약 조달 자율화 시범 실시("26~)
 - 지방정부와 면밀한 사전 협의 및 조달기업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장 혼란 방지
 - 자체 조달경험이 적은 지방정부에 컨설팅 등 자체 조달 지원
 - *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한 단가계약 상품을 등록 관리 할 수 있는 전용물 구축(나라장터 內)
- **(현장소통)** 수요기관, 업종별 협·단체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조달자율화 성과 분석 및 문제점 모니터링
- **(개혁과제 관리)** 총 70개의 개혁과제별 이행 상황 상시 관리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	2
III. 개혁 방안	3
1.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	3
2. 경쟁 확대 및 가격·품질 관리 강화	8
3.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선도	11
4. 진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	15
IV. 향후 추진계획	19
 [참고 1] 우리나라 공공조달 현황	23
[참고 2] 혁신조달 제도 개요	24
[참고 3] 「공공조달개혁」 관련 업계 주요 의견 ..	25

I. 추진 배경

□ **(공공조달 현황)** 공공조달 전체 규모는 225조원(GDP의 9%)이며, 그 중 조달청을 통해 71조원(32%) 공급(2024)

○ 조달청 계약 중 의무*적 중앙조달의 비중은 약 48%이며, 이 중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에 대한 구매가 의무구매 전체의 68% 차지

* 국가기관 : 1억원 이상 총액계약 +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, 30억원 이상 공사
지방정부 :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

□ **(국민 시각)**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'투명·청렴·전문성'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,

○ 조달물자를 실제 구매·사용하는 수요기관의 가격·품질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*

* 최근 5년(2020~2024) 수요기관 만족도 : 투명·청렴·전문성 97점, 가격·품질 87점 수준

○ 유연하지 않은 의무 중앙조달로 인해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제한되고, 실질적 경쟁 부족으로 가격·품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

대통령 지시 사항

- ▶ “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, 경쟁이 아닌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”(2025.7.1. 국무회의)
- ▶ “단정적으로 조달청 계약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면 각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조달 비리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음. 다양한 입장에 대한 치밀한 논의·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”(2025.7.8. 국무회의)

□ **(글로벌 동향)** OECD 가입국 대부분(35개국 중 33개국)은 중앙조달기관을 통한 집중구매를 하면서도, 지방정부의 구매·계약 자율성 또한 보장 중

○ 효율적 재정집행, 사회·경제적 약자 지원, 신산업 육성, 부패 차단, 기업 편의 등 중앙(집중)조달의 장점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되,

○ 중앙조달기관 이용 여부는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

⇒ 수요기관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시장 경쟁성을 높이고, 전략적 중앙조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체계 전면 개혁

Ⅱ.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

- ◇ 수요기관 조달은 자율화하되, 조달시장 감시와 약자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, 정책지원 효과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
- ◇ 조달 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, 가격·품질 등 관리 강화
- ◇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·기후테크 등 신산업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
- ◇ 국민 생명·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상생의 공공조달 생태계 구현

목표

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+ 전략 조달 강화

조달 개혁 방안	추진 방향	추진 내용
	1.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	① 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율화 ②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
	2. 경쟁 확대 및 가격·품질 관리 강화	① 조달시장의 경쟁 확대 ② 조달가격 합리화 ③ 조달물자 품질 관리 강화
	3.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선도	① 중소·벤처·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강화 ②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산업 육성
	4. 진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	① 조달의 사회적 가치 추구 ②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조달

추진 체계

- ▷ 개혁과제 발굴 및 이행을 위한 **전담조직 조달개혁과 신설**
- ▷ '수요기관 현장소통', '조달기업간담회' 등을 통한 의견 수렴

※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
① 수요기관 : 11개 광역권역 140개 지방정부 조달부서장 의견 청취

② 조달기업 : 관련 협회 등 유관 단체 대면 1:1 의견 청취(4회, 259개사)

* 공무원 조달비리, 지역기업 특혜 등의 조달기업 의견에 대하여 보완대책 마련 <참고 3>

Ⅲ. 개혁 방안

1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

① 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율화

◆ (현황)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조달로 인해 수요기관 맞춤형 수요 반영 곤란, 선택권 제한, 낮은 경쟁성, 가격·품질 문제 등 제기

☞ (개선방향) 수요기관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·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, 조달청 계약 물품 구매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

① (단계적 추진)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, 전면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 실시 후 단계적 확대

○ (1단계 : 시범실시)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실시(2026)

① (대상기관) 광역 지방정부(소속 기초지방정부 포함) ☞ 경기도, 전북특별자치도

* 자율화 시범 참여 의사 및 수요 확인 후 대상 지방정부 선정

② (대상물품) ‘전기·전자 제품군’

■ PC, 노트북 등 사무용 및 생활가전제품 120품목 이상, 약 2조원
(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지방정부 구매액 20% 수준)

* ① 다양한 규모의 기업 다수 참여, ② 빈번한 가격 변동, 시중거래가격 비교 용이,
③ 중기간 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이 공존하여 정책 영향에 대한 효과 분석 가능

※ 근거법령 : 「조달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 제3호(구매위임)

○ (2단계 : 확대) 시범실시 성과 분석 및 보완 대책 마련 후 지방정부 전체 확대(2027~)

* 「조달사업법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2호, 「지방계약법시행령」 제80조 개정(2026.下)

-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의무조달 금액을 국제입찰 기준 이상으로 상향

* 물품·용역계약 1억원 → 2.3억원, 공사계약 30억원 → 88억원 이상

- 공공기관 자율화는 지방정부 적용 이후 추후 검토

② (부작용 최소화) 조달 현장에서 우려하는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*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

* ① (부패방지) 자체 조달에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방지 방안 도입

② (약자기업 지원) 시범실시 중에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기업 구매비율 유지 집중 점검

② 자율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

① 자체조달의 부패·불공정조달 행위 감시·감독 강화

◆ (현황) 자체조달 계약담당자의 지역기업 유착 및 입찰·계약 비리,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 등 조달 관련 부패·불공정행위 증가 우려

☞ (개선방향) 자체조달에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 방지 방안 도입 및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·감독 강화

① (자체조달 부패방지) 자체조달 시 발주기관의 부패행위 방지

- 조달청이 자체조달건을 분석해서 발주기관의 부당한 입찰조건 (규격, 입찰자격 등), 과도한 요구,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시정·개선 권고
 - 자체조달 시에 나라장터에 입찰·계약정보를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, 이행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권한 신설
 - * 「전자조달법령」(자체조달 분석 및 시정·개선 권고), 「조달사업법령」(부당행위 관리, 감독)에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운영
 - ** 「국가 및 지방계약법령」(공공계약절차 전자적 처리 의무화 및 계약정보 통합공개)
 - 지방정부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조달청 데이터 관리시스템 (조달데이터허브)과 연계를 의무화하여 조달 실적 등 실시간 집계·관리
-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 입찰·계약 비리 적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*' 적용
 - * 지방정부 자율 구매 권한을 회수하여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 강제
-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의 '나라장터'를 통한 전면 공개*
 - 지방정부별 수의계약 등 주요 계약 정보를 공개*하고 상시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정 유도
 - * 업체명, 대표자, 계약물품(금액), 건수, 업체 순위, 계약방법 등 상세 내역의 정기 (반기) 및 수시 공개

② **(부패유발 요인 제거)** 주요 조달절차별로 조달청이 시행하여 검증된 각종 부패방지 장치를 자체조달에 확산

조달절차	부패 유발요인	조달청 운영제도	예시
조달 전반	수기계약 등 불투명한 조달절차	시스템을 통해 조달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결과 공개	공고, 개찰, 낙찰자선정, 계약체결 등 → 조달 전과정의 전자적 처리 및 공개 의무화
규격·표준 설정	특정업체에 치우친 규격(표준) 반영	사전규격 공개 및 처리결과 공개	→ 14일 이내 결과 통지, 처리결과 공개 의무화
입찰	-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참가자격 - 사업내용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 '묻지마' 입찰	- 표준입찰공고문 사용 - 사전경쟁성 검토 - 기술형입찰 사전설명회 - 무분별한 공급입찰 방지대책 등	① 표준화된 입찰공고 ② 입찰참가자격(경쟁성) 사전검토 → ③ e-제안요청도움 시스템 활용 ④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⑤ 공급입찰의 제조입찰 전환 등
평가심사	- 한정된 위원 풀 - 기업-평가위원 유착,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 - 평가과정 공개 미흡	- 대규모 평가위원 풀 및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 운영 - 주요 평가 유튜브 생중계 실시 등	① 조달청 평가위원 풀 및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 활용 → ② 평가 모니터링단, 신고센터 운영 및 평가이력관리 ③ 평가과정 생중계 ④ 조달청에 평가대행 의뢰 등
계약	- 빈번한 계약(심사) 포기 및 브로커에 의존한 계약이행 - 과도한 공사 설계 변경 등	- 채권양도 승인 및 계약직접이행 의무 - 공사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	① 계약(심사) 상습포기자 불이익 부여 ② 채권양도 승인 및 직접이행 의무화 (미준수 시 불이익 포함) → ③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대상을 자체조달 일반공사까지 확대 등

③ **(불공정 관리 강화)** 수요물자 조달과정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

- 신고조사 외 불공정행위 의심 건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 거부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사 실효성 제고

* (현행)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조사 가능, 조사거부·불응 시 제재수단 부재

- 원산지 위반 등 중대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

- 물품구매의 특성에 맞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정비

④ **(예외 운영)** 국가적 위기·재난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물품은 예외적으로 조달청이 일괄 계약·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

② 공공조달의 약자기업 지원 효과 제고

◆ (현황) 대기업제품 선호로 중소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감소 등 공공조달의 정책 지원기능 저하 우려

☞ (개선방향) 범정부적 협력으로 약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관리 강화

① (정책지원 법제화) 중소·여성·장애인기업 등 지원 정책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, 자체조달 시에도 준수 의무를 부과

- 모든 기관이 지켜야 할 조달의 기본원칙, 우선구매제도 등 조달특례 평가·관리 등을 포함*한 「공공조달법」 제정 중

* 기본원칙(제5조) 전략적 운용(제10조),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(제11조), 사회환경적 책임고려(제12조), 조달특례 성과관리(제16조) 등

② (점검체계 구축) 범정부 회의체(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) 등을 통해 중소·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 법정 우선구매 이행을 상시 점검

- 나라장터를 통해 관련 통계를 실시간 집계·공개하고,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공표

③ (지원 관리 강화) 자율화 시에도 자체적인 공공구매 실적에서 약자기업의 지원 실적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

- 기존 약자기업(중소·여성·장애인기업) 구매 실적* 등을 감안하여 시범 지방정부에서 약자기업 구매 목표를 설정하는 준수 조건 부여

* 자율화 시범 지방정부의 약자기업 구매 변동 경향을 분석하여 전체 확대 시에도 구매비율이 하락하지 않는 방안 추가 검토

< 시범대상 지방정부 약자기업 지원 실적 >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중소기업		여성기업		장애인기업	
	합계	비율	합계	비율	합계	비율
경기도	6,331	62.9	875	8.7	118	1.2
전북도	2,197	80.2	360	13.1	69	2.5

※ 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정보망 발취

- 자율화 이후 지방정부별 약자기업 구매 비중·경향,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권고

- 지방정부의 약자기업 구매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

* 중소·여성·장애인기업 구매 제도(기법) 및 업체(물품) 정보 제공(나라장터 쇼핑몰 內 인증물)

③ 수요기관의 자율구매 역량 강화 지원

- ◆ **(현황)** 복잡한 규정과 절차, 어려운 입찰 평가와 심사, 자체 조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으로 자체조달에 어려움 호소
- ☞ **(개선방향)**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자율구매 활성화

① (발주지원) 맞춤형 발주지원 서비스 제공

-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위해 계약방법(입찰참가자격, 경쟁성) 검토, 규격 검토, 제안요청서 작성 등 컨설팅 제공

* 시범사업 참여 지방정부 관할 지방청에서 수요기관 컨설팅 수행
(경기도 → 경기조달지원센터, 전북도 → 전북지방조달청)

- 조달청 평가위원 풀(약 1만명 규모) 공동 활용*, 평가대행 서비스 확대** 등 자체조달 시 평가업무 수행을 지원

* 평가위원 선정 : 현행 1억원 이하의 소액 협상계약 → 확대전체 협상계약

** 평가대행 : 현행 중앙조달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→ 확대 자체조달 협상계약

- 다양한 조달콘텐츠*를 생산·보급하고, AI 기반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조달업무 상담 챗봇 운영

* (예시) 분야별 업무매뉴얼, 계약법령 위반 사례, 감사 사례, 조달 관련 소송·판례 등

② (플랫폼) 나라장터에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단가계약 상품을 등록·관리할 수 있는 전용몰(가칭 '지역장터') 등 전자조달 플랫폼 지원

- 기존 표준화된 기능에 더해 기관 맞춤형 기능을 구현하고 운영 자율권 최대한 부여*

* 조달자율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지방정부의 55%가 전용몰 이용 희망(2025.7월)

③ (교육) 자체 조달 담당자의 조달 전문 교육 강화

- 계약법령·예규 등 관련 규정, 단가계약 실무 등 교육과정 다양화

- 시행을 앞둔 '공공조달관리사'(국가기술자격) 대비 교육과정도 운영

*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과정 및 일수(2→3일), 횟수(4→10회) 확대

2

경쟁 확대 및 가격·품질 관리 강화

1 조달시장의 경쟁 확대

◆ (현황) 계약물품 선정의 불투명성, 특정업체 집중 구매 등 경쟁 부족이 가격·품질 등 주요 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

☞ (개선방향)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제도 보완

1 (경쟁 확대) 일정금액 이상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할 경우 품질·가격을 추가적으로 비교하여 구매하는 '2단계 경쟁' 확대 및 개선

○ 기준금액(5천만원, 중기간경쟁 1억원) 미만이라도 2단계 경쟁을 수요기관 선택 허용하고,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차등화

○ 2단계 경쟁 참여 기업을 확대*(5개사 이상 → 무제한)하고, 수요기관이 원하는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2단계 경쟁 평가방식 다양화

* 수요기관 지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기업이 경쟁하는 공고에 의한 경쟁방식 확대

2 (계약물품 선별)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, 부적합 품목 퇴출 등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'품목 심사 위원회(가칭)'에서 결정

○ 거래가격 신뢰성 부족, 설치비 과다,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 등 적정가격 결정이 어려운 품목은 경쟁입찰(총액) 전환

3 (과점 완화) 우수조달물품 중 과도한 수주 쏠림(예 : 1개 사 점유율 50% 이상)이 있는 제품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정조치

○ 중기 간 경쟁물품 중 과점품목(독과점 유의품목·집중도 관리품목)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*중기부 또는 경쟁입찰 전환

*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선행 필요

4 (브로커 방지)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근절

○ 상습 심사 포기자*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, 등록 업종·물품 제한, 공급확약서 징구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심사 강화

* 「국가계약법」 적용 공급 입찰에서 연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

② 조달가격 합리화

◆ (현황) 조달청 단가계약제품 가격이 높다는 지적과 중소기업의 제값 보장 요구 등 상반된 의견이 공존

☞ (개선방향) 가격 투명성·탄력성을 높이고 검증과 관리를 강화하되
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을 병행

- ① (가격 비교·검증 강화) 민간 거래규격으로 정비, 엄격한 가격 비교·검증 조사
 - 가격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계약
 - 거래실례 가격 검토기준을 강화* 증빙 미흡 품목은 계약 배제
 - * (예시) 동종업계·특수관계인 간 거래실적 불인정 등
 - AI 기반 가격 비교·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중 제품과 가격 비교·분석 강화
- ② (다각적 가격관리체계) 촘촘한 가격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·방법 등 다각화
 - 위반가격 조사를 위한 자체 조직과 인력을 보강
 - 가격 논란 물품은 '가격 중점관리 품목'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
 - * 가이드라인 마련, 전담부서의 가격 적정성 검증, 조사 결과 공개(연 2회)로 자발적 조정 유도
 - 동적 가격 책정(dynamic pricing)을 허용
 - * 계약단가 이하에서 가격조정 자율성을 허용하여 상황에 따른 가격의 탄력성 확보
- ③ (제값주기) 원자재 가격 변동, 물가 상승분은 계약에 신속 반영
 - 원가계산 가격 산정 물품에 대한 '단품 물가조정제도*' 확대
 - * 2025년 선박 등 3개 품명에 시범 도입, 특정규격 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
 - 계약가격 산정 기반이 되는 구매실례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*
 - *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일정비율 상승 시 반드시 인상분을 반영
 - 현장·전문가의견 등을 수렴하여 물품 분야 낙찰하한율 적정화*
 - * 2017년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(80.5% → 84.2%)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중
 - 자체 조달계약 시 조달청 계약단가 대비 일정 범위 내 차이 허용
 - *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우대가격유지의무 적용 완화

③ 조달물자 품질 관리 강화

◆ (현황) 일부 조달물자의 품질에 대한 논란과 자체조달 확대 시 납품검사 부실화 등에 대한 우려

☞ (개선방향) 품질 관리 강화 및 고품질 물품 납품 기회 확대

① (품질 관리) 조달물자 품질에 대한 점검·평가 관리를 강화

○ 품질점검대상 물자를 기존 안전관리물자(조달청 지정, 275개 품명)에서 확대 단가계약물품 전체(1,570개 품명)로 확대

* 중요도(국민생활 밀접도, 위해성 등)에 따라 점검주기 차등화 및 안전관리물자의 전문기관 검사 의무화

○ 민간 거래는 적지만 공공 수요가 있는 제품은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체 발주 시 활용하도록 권고

○ 현장 납품 시 빈번한 규격, 품질 변경이 발생하는 우수조달물품*에 대해 규격 재검토 및 사후 점검** 실시

* 성능,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「우수조달물품」으로 지정·고시하는 제도

** 품질·기술 유지 여부, 공장 변경 및 원산지 위반 등 부정·부당 납품 등 점검

○ 물품 이외 서비스(용역)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사업 이행 단계별 서비스이행실적 평가 도입

② (고품질 물품 확산) 고품질 제품을 우대하여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선택을 유도

○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기반 사전심사, 핵심 적용기술 위주의 직접생산기준 마련

○ 엄격한 품질심사를 거치는 '품질보증조달물품' 우대조치 강화

* 현행 조달청 입찰심사에만 가점 → 개선 자체조달 시에도 가점 부여(행안부, 중기부 등)

3

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선도

① 중소·벤처·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강화

①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'혁신제품 공공구매' 대폭 확대

- ◆ (현황)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며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('19~)
-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성장 측면에서 효과가 커 지속 확대 필요
 - ☞ (개선방향) 신산업(AI, 로봇, 기후테크 등), 스타트업 중심 혁신조달 강화

① (제품발굴) AI 등 혁신제품을 2030년까지 누적 5,000개 확보(^{2024년} 2,280개)

- AI·기후테크 등 테마형 혁신제품 발굴행사 개최(2026~2027년, 연 3회)
- 혁신 제품의 발굴·선정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인 '스카우터'를 전문 기관까지 확대하고, 지역 유망기업에 대한 추천도 강화*

* AI 등 특화된 연구기관을 스카우터 기관으로 선정하여 발굴하고, 지방정부·지역 테크노파크 및 연구개발특구와 협력하여 지역 유망 벤처·스타트업 추천

-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제품은 지정심사를 생략하고, R&D 결과물과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 등 적극 유입

② (구매확산)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'30년까지 2.5조원+a 달성(^{2024년} 1조원)

- 혁신제품 의무구매 기관을 확대*하고, 구매 목표 비율도 상향**

* 현행 국가, 지방정부, 공기업, 공공기관 등 846개 → 확대 지방정부 출연기관 등 1,200개

** 매년 기재부 주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을 혁신제품 구매목표로 설정(^{2025년} 1~1.7%, 중앙 1.0%, 지방정부 1.5%, 공공기관 1.7%, 지방공기업 1.2%)

- 조달청의 시범구매(^{2025년} 529억원 → ^{2026년} 839억원) 지원과 구매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
- 혁신조달 유공 정부포상 확대 등 기업·기관 인센티브 강화

②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총력 지원

◆ **(현황)** 조달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양적·질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해외실증과 R&D 기회를 제공 중

👉 **(개선방향)** 혁신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

① **(성장지원)** 조달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

-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제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R&D 지원 확대(2025년 30억원→2026년 100억원)

사 례 지역 빅데이터 기반 고령자 노쇠를 예측하는 기술 R&D 개발
→ 일본과 2.6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, 싱가포르 수출 대리점 계약추진 중

- 시범구매 후 실증 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 부여
- '혁신제품 지원센터' 기능*을 강화해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
 - * 혁신조달全过程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정 절차뿐 아니라 사후관리, 후속구매 활성화, 맞춤형 컨설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기능 강화
-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혁신기업 전용 금융·투자 지원을 강화*
 - * 공공조달 특화 IR 개최, 대출금리 우대에 더하여 혁신기업 특례 보증상품 신설 추진
- 혁신제품 지정 및 계약 효율화*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합리화
 - * 경미한 규격 추가 시 서류 및 심사 간소화, 단가계약 운영 방식 효율화 등

② **(글로벌 도약)**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

- 해외실증 사업(2025년 140억원→2026년 200억원)으로 초기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,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수자원공사 등과의 실증 협업을 강화
- 국제개발협력사업(ODA)과 혁신제품 간 연계 활성화

사 례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사업에 포터블 엑스레이, 화재확산 방지용 투척형소화기, 전기인프라 복구용 디젤발전기 등 혁신제품 선정(2023년 12억원, 2024년 30억원)

②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

◆ (현황) AI 주도권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으로 AI 산업 육성으로 AI 3강 도약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·투자가 절실

-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적극적인 AI 구매자로서 역할 필요

* 2024년^{추정} AI산업 공공매출액은 1.2조원, 총매출의 20% (「AI산업 실태조사」, SPRI)

울산 AI데이터센터 간담회 시 대통령 말씀(6.20.)

“정부가 AI 시장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. 약간의 위험을 부담하고 제품을 사주는 것이 전액의 비용을 대주는 것 보다 나을지 모른다.”

- 또한, 복잡하고 어려운 조달절차에 AI를 적용하여 공공AX에 앞장서고, AI 기업의 수주 및 역량제고 기회 제공 필요

☞ (개선방향) 정부구매력을 활용한 AI산업 활성화 및 공공AX 선도

① (진입·판로) 정부가 AI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

- 공공에서 사용가능*한 ‘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**’, 순찰·경비 등 ‘AI 로봇 서비스’ 등 신규 서비스의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·공급

* (예) 국정원 ‘상’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하고 국정자원관리원의 보안요건을 충족한 AI서비스(국정원, 국정자원관리원 협조)

** 회의록 자동 요약 및 키워드 추출, 정책 브리핑 초안 생성, 문서 표준화, 통계 분석 등

- AI 적용 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,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진입·구매 지원

-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상용 SW 전용 쇼핑몰인 ‘디지털서비스몰’을 고도화*하여 거래를 활성화

* 디지털서비스몰-이용지원시스템(NIA)간 시스템 연계로 신속한 계약, 필수인증 취소 또는 만료 시 자동 판매 중지 등 기능 개선

-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AI 적용 제품·서비스 구매 면책 제도 도입 추진

* 면책조항을 포함한 「인공지능기본법」 개정안이 발의(최민희, 2025.7.28.)되었으며, 필요 시 「조달사업법령」에도 반영 검토

② (계약·평가방식 전문화) AI 기술 특성에 맞게 계약제도를 운영하고, 입찰 평가·심사 기준을 전문화

- AI 기술 적용사업은 기술능력 중심으로 평가*하여 사업자를 선정

* AI 관련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최대 비중(90점) 또는 차등점수제(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위별 편차를 부여하여 기술능력평가 변별력을 확보하는 제도) 우선 적용

-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AI 분야를 전담 심사하는 전문평가제 도입*

*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과정에서 전문성이 높은 평가위원이 AI항목을 전담심사 (현행 40억원이상 대형SW사업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→ 개선 AI분야 사업은 우선 실시)

-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전문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전기전자, 정보통신 분야 등과 분리하여 'AI 분야'를 신설

③ (조달행정AX) 복잡하고 어려운 조달 절차에 AI Agent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* 선도

* AX(AI+X, AI Transformation) : 특정분야에 한정된 인공지능 활용을 넘어, 산업, 공공, 사회, 지역, 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

- 조달분야 및 단계, 참여자,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'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'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전환 추진
- 가격조사, 공사원가 검토, 평가 등 조달업무처리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업무 효율화 및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기회 제공

< 조달업무 AI 도입 예시 >

- ① AI기반 가격비교·조사 : 민·관 조달물품 가격비교, 우대가격유지의무 등 가격관리
- ② 공사원가 검토 : 공사원가 빅데이터 구축, AI를 활용한 단가 추천 및 이상단가 탐지
- ③ 제안요청서 생성 및 요약·분석 : 생성형 AI 기반의 맞춤형 제안요청서 생성
- ④ 제안서 평가 : 생성형 AI 기반의 제안서 내용 요약 및 평가위원용 기초자료 생성
- ⑤ 평가위원 선정·자동매칭 : 사업유형별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자동추천 및 매칭
- ⑥ 조달제도 PoC 컨설팅 : 제도상담 및 지능형 검색 기반 제품 추천 자체 PoC 개발
- ⑦ 분쟁·소송 대응 :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통한 조달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
- ⑧ 대화형 조달데이터 분석 : AI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통계 자료 제공
- ⑨ 국가전략비축자원 공급망관리 : AI 기반 수요예측, 재고관리 및 업체관리
- ⑩ 지능형 기초금액 작성지원 모델 : AI 기반 가격실례 검색 등 가격조사 선진화

4

진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

1 조달의 사회적 가치 추구

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

◆ (현황)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를 불문한 세계적 과제이며, 우리나라의 국가·산업 경쟁력과도 직결

☞ (개선방향) 공공조달을 통해 기후테크·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, 녹색 구매 기반 강화,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등 선도

1 (구매 확대) 기후테크·저탄소 스타트업을 발굴·우대하고, 관련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공 구매

○ 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'혁신제품 스카우터'로 지정하여 기후테크·저탄소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

- 탄소중립·순환경제 관련 혁신제품군을 '중점 시범구매 대상'으로 지정하여 우선 구매

○ 탄소중립 관련 인증을 우수조달물품 지정, 다수공급자계약(MAS) 등 평가항목으로 신설

- '저탄소제품인증'과 '환경표지인증'을 신인도 평가지표에 추가

- 녹색기술 인증 배점 확대, 관련 인증 및 포상기업에 가점 신설

2 (기준 강화) 최소녹색기준* 적용제품을 확대하고 녹색정보망을 통한 녹색 정보제공 및 기후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 강화

* 에너지효율, 유해물질 배출, 재활용 등 환경기준 충족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(현재 113개 품명)

3 (친환경건축 확산)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검토 기준(2025.下) 및 에너지 최적화 설계가이드라인 마련(~2029)

* 조달청-국토부 MOU(2025.3월)를 통해 공공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진행중(~2029, 50건)

② 사회적 책임 조달로 대한민국의 '진짜 성장' 선도

◆ (현황) 공공조달은 연간 약 225조원 규모(GDP의 약 9%)로 경제·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

* 공공조달 규모/참여기업 : (2018년) 141 조원/40 만개 → (2024년) 225 조원/60 만개

☞ (개선방향)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좋은 일자리 확산, 사회적 연대경제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조달 활성화

① (좋은 일자리 확산)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, 고용안정 기여 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 강화

○ 행복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'행복한 일터(일자리)' 인증 기업*에 대한 입찰 우대

*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'행복한 일터(일자리) 인증제' 도입 추진 중

○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, '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'을 지원하는 평가지표(가점) 신설

* 기업의 유연근무,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·생활 균형 경영평가지표에 따른 우수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

○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'가족친화인증기업'에 평가 우대

* (기존) 계약이행 능력심사 가점, 기술용역·물품구매·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→ (추가)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종합평가 시 가점,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

② (사회적연대경제 지원) 사회적연대경제조직*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히 참여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

* 사회적연대경제조직 :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

○ 자활기업, 마을기업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우대하는 방안* 마련

* 현재 우대중인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우대

○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'가치장터*'를 나라장터와 연계해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

* 기존 사회적기업 판로플랫폼 고도화 개통(2025.9월 개통)

②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조달

①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

◆ (현황)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유사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

☞ (개선방향)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

① (제재 강화)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참여 제한

-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*하고, 제재 효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** 추진

* (예시) **현행**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→ **개선**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

** 법인 분할, 영업 양수, 명의 변경 시 제재 승계 및 이력 확인 의무화,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제재 효과가 중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상향(10→20%)

- (판매중지) 사망사고 발생 시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 판매 중지

-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가 제조 또는 제품 납품 및 설치과정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판매중지

② (입찰·평가 시 불이익)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입·낙찰 평가기준 강화

- (시설) 종합·사전심사의 '건설안전' 평가항목을 가점제 → 배점제로 전환하여 안전평가의 실효성 확보

-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신설

- (물품·용역)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감점,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감점 신설 및 지정기간 연장 배제

② 공공조달 전(중)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

◆ (현황) 안전 수칙 미비 등으로 건설 현장 등에서의 사망자 지속 발생

-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요구 증대

☞ (개선방향)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재해 근절 및 예방 방안을 마련

① (계약 과정의 안전성 강화) 공공사업의 설계, 이행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, 품질 관리를 강화

- 조달청 직접 관리 사업은 '안전·품질관리 전문위원회'를 신설하여 설계검토 과정에서 안전계획, 구조계산 오류, 물량 누락 등 집중 점검
- 공공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검토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반영한 화재 대비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·배포
- 조달기업이 안전상의 문제로 일시 공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,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

② (안전투자 비용 보장) 조달기업이 안전, 품질 분야에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적정 계약대금 보장 및 간접비 부담 완화(「국가계약법령」 개정)

- 대형사업의 실시설계 기간동안 물가변동을 허용하고, 100억원 미만 소형사업의 낙찰하한율 상향(약+2%p) 조정 검토
- 안전 비용이 포함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, 조달기업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 연장 시 연장비용 지급
-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안전역량*을 갖춘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사유에 안전부문을 신설

* 안전분야 기술·인증 취득, 일정 비율 이상 전문인력 고용 등

IV. 향후 추진계획

주요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.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		
① 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율화		
• 자율화 시범 운영	2026.	조달청, 경기, 전북
• 단가계약물품 자율화를 위한 「조달사업법령」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	2027.上	기재부, 행안부, 조달청
② 자율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		
❶ 자체조달의 부패·불공정조달 행위 감시·감독 강화		
• 발주기관 부당 요구 방지(「조달사업법령」 및 「전자조달법령」 개정)	2026	기재부, 조달청
•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위탁 대상 확대	2027.上	기재부(행안부), 조달청
• 지방정부 수의계약 등 계약 정보 정기(상시) 공개	2026~2027	기재부, 조달청
•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및 거부·불응 기업에 과태료 부과(「조달사업법령」 개정)	2026.下	기재부, 조달청
• 물품구매 특성에 맞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정비	2026.下	기재부, 조달청
❷ 공공조달의 약자기업 지원 효과 제고		
• 약자기업 지원 등 정책 지원 법제화를 위한 「공공조달법」 제정	2026	기재부, 조달청
• 약자기업 의무구매 점검 및 관리 강화 (범정부 회의체를 통한 우선구매 점검체계 구축)	2026.上	기재부, 조달청
❸ 수요기관의 자율구매 역량 강화 지원		
• 수요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	2026.上	조달청
• 조달청 관리 평가위원 공유 및 평가대행 확대	2026.上	조달청
• 수요기관 요청 전용몰 구축	요청 시 협의	조달청
• 조달전문교육 확대	2026.上	조달청
• ‘공공조달관리사’ 취득 지원 및 우대	2026.下	조달청

주요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2. 경쟁 확대 및 가격·품질 관리 강화		
① 조달시장의 경쟁 확대		
• 2단계경쟁 제도 개선	2026.上	조달청
• 단가계약 품목 심사위원회 운영	2025.下	조달청
• 우수조달물품 집중관리대상 물품 선정·관리	2025.下	조달청
② 조달가격 합리화		
• 조달전용 특수규격 제거	2026.上	조달청
• 단가계약 가격 증빙기준 강화	2025.下	조달청
• SI기반 가격 비교 조사시스템 구축	2026~2027	조달청
• 가격조사 자체 조직 및 인력 보강	2026.下	조달청
• 가격 중점 관리 품목 지정 운영	2026.下	조달청
• 동적 가격 책정 방안	2026.上	조달청
•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 (「국가계약법령」 및 예규 개정)	2026.下	기재부, 조달청
• 자체 조달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기준 완화	2026.下	조달청
③ 조달물자 품질 관리 강화		
• 안전관리물자, 일반물자 세분화	2025.下	조달청
• 품질점검 대상 확대(안전관리물자 → 전체 단가계약물품)	2027.上	조달청
• 안전관리물자 전문기관 검사 의무화	2026.上	기재부, 조달청
• 우수조달물품 규격 재검토 및 사후 점검 체계 마련 (산업계 협업 등)	2026.上	조달청
• 서비스 이행실적평가 도입	2025.下	조달청
• 우수조달물품 데이터 기반 사전심사 강화	2026.下	조달청
• 우수조달물품 전용 직접생산확인 기준 마련	2026.上	조달청
• 품질보증조달물품 우대 방안	2026.上	중기부, 행안부, 조달청

주요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3.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선도		
① 중소·벤처·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강화		
❶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'혁신제품 공공구매' 대폭 확대		
• AI·기후테크 등 테마형 혁신제품 발굴행사 개최	2025.下	조달청
• 전문기관 스카우터 선정 및 심사절차 간소화	2025.下	조달청
• 지역 유망기업 혁신제품 민간전문가 추천 확대	2026.上	조달청
• 규제특례 실증제품 및 R&D 결과물 적극 유입	2025.下	조달청
• 민간투자 연계 혁신제품 지정	2026.上	조달청
• 혁신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	2026.上	기재부, 조달청
• 조달청 시범구매 지원 및 혁신제품 구매면책제도 활용	2025.下	조달청
• 혁신조달 유공 정부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	2026.下	조달청
❷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총력 지원		
• 혁신제품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	2025.下	조달청
• 혁신제품 지원센터 기능 강화	2025.下	조달청
• 해외실증 협업기관 확대	2025.下	조달청
• 혁신제품 ODA 사업 참여 확대 추진	2025.下	조달청(KOICA 등)
②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		
• 신규 서비스 나라장터 쇼핑물계약 확대	2025.下	조달청
• 다수공급자계약(MAS) AI 적용 제품 납품실적 요건 폐지, 계약소요기간 단축	2026.下	조달청
• AI기반 상용SW(수의계약) 진입 시 납품실적 요건 폐지	2025.下	조달청
• AI 적용 제품 물품 적격심사 등 입찰 가점 부여	2026.下	기재부, 조달청
• AI 기반 상용 SW MAS 계약 2단계 경쟁 완화	2026.下	기재부, 조달청
• 디지털서비스물 고도화	2025.下	조달청

주요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• AI 적용 제품·서비스 면책제도 신설	2026	조달청(과기정통부)
• 정보화 사업 AI 전문평가제도 도입	2026	조달청
• 우수제품 AI 전문평가 신설	2026.下	조달청
• 공공조달 AI전환 기본계획 수립	2025.下	조달청
4. 진짜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		
① 조달의 사회적 가치 추구		
❶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		
• 환경 분야 전문기관 '혁신제품 스카우터' 지정	2026.下	조달청
• 탄소중립·순환경제 관련 혁신제품군의 '중점 시범구매 대상' 지정 및 우선 구매	2026.上	조달청
• '탄소중립 정책' 인증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다수공급자계약(MAS) 등 평가항목 신설	2025.下	조달청
•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 확대	2026.下	조달청
• 친환경 건축물 설계검토기준 및 에너지 최적화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	2025.下 / ~2029	조달청
❷ 사회적 책임 조달로 대한민국의 '진짜 성장' 선도		
• '행복한 일터' 인증 기업 등을 물품서비스·공사 입찰 우대	2027	조달청
• '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'을 평가지표 항목으로 신설	2025.下	조달청
•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(MAS) 2단계평가 우대 방안 마련	2025.下	조달청
• '가치장터'와 나라장터 연계	2025.下	조달청
②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조달		
• 조달청 직접 관리 사업을 위한 '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' 신설	2026.上	조달청
• 공공건축물 화재 대비 설계검토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	2025.下	조달청
• MAS 등 적격성평가 결격사유 및 판매중지 신설	2025.下	조달청
• 중대재해 발생기업 시설공사 입·낙찰 평가기준 강화	2025.下	조달청
• 중대재해 발생기업 물품(용역) 구매 입·낙찰 평가기준 강화	2025.下	조달청
• 중대재해 발생기업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 감점 신설	2026	조달청

참고 1

우리나라 공공조달 현황

1 공공조달시장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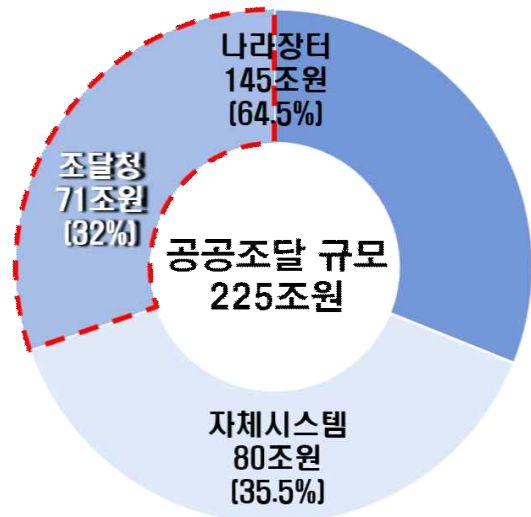
- ① 2024년 공공조달 규모는 225조원
(GDP의 9% 수준)

물품	용역	공사
84조원 (37%)	55조원 (25%)	86조원(3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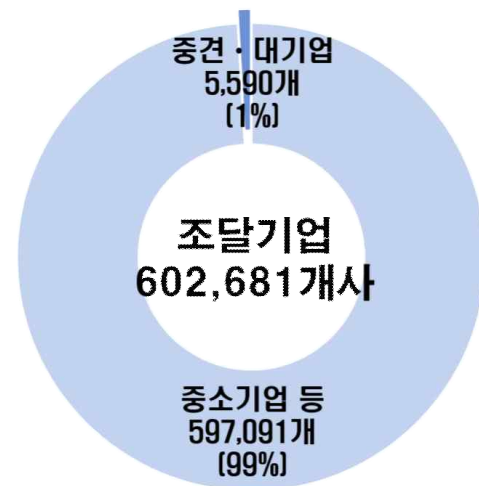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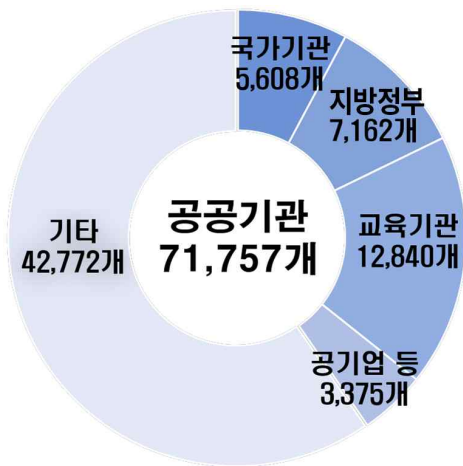
- ②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
145조원 거래('24)

※ 경쟁가능 해외조달시장 규모(2023)

정부조달시장WTO GPA가입국 1.7조\$,
UN 245억\$, 다자개발은행 24억\$



2 7만여 수요기관, 60만여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(2024)



- ③ 국가기관, 지방정부, 교육기관, 공기업,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유형
- ④ 등록 기업의 99%는 중소기업
- ⑤ 여성기업 15.6만개사(26%), 장애인기업 6천개사(1%), 사회적기업 3천개사(0.5%)

참고 2

혁신조달 제도 개요

- (개념)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며, 기업의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

*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초기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, 캐나다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에 도입

- (지정) ①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총괄하고, ②조달청, 중기부 등 16개 부처*가 혁신제품을 지정(지정기간 : 기본 3년 + 연장 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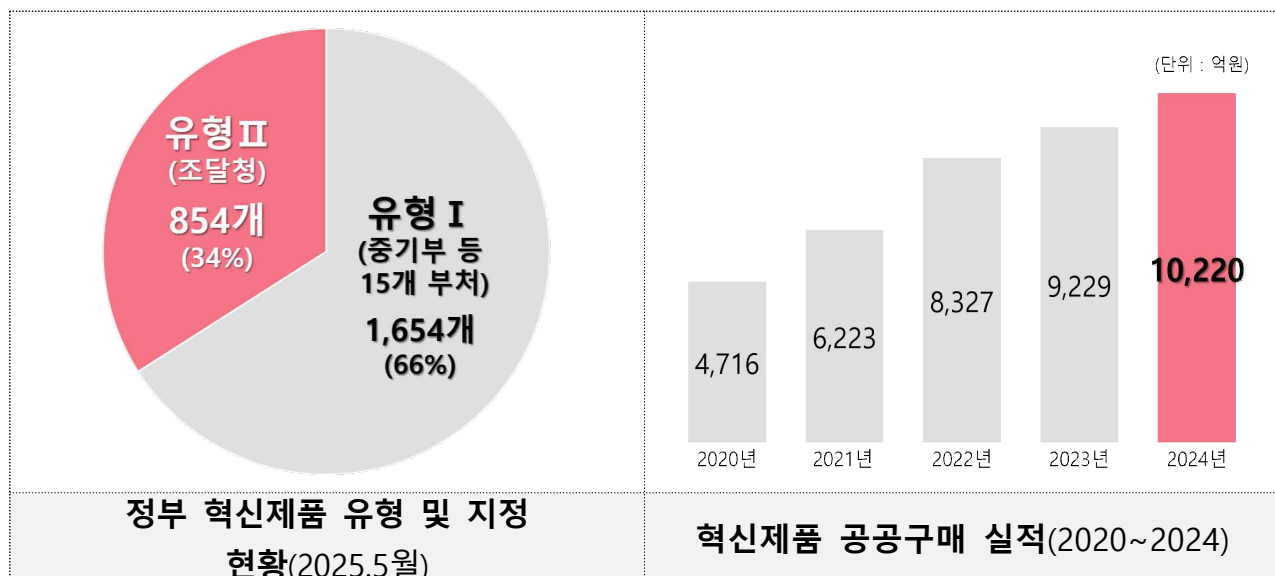
* 과기정통부, 행안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기후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산림청, 특허청, 해경청, 경찰청, 기상청, 소방청

-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(제품당 3억원 한도), 혁신장터(플랫폼) 운영, 조달(수의)계약 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혁신제품 확산 역할을 수행

- (혜택) 혁신제품은 수의계약(「국가계약법시행령」 제26조) 및 시범구매 대상이 되며, 공공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받음(「조달사업법」 제27조)

- (구매) '24년 공공구매액은 10,220억원으로 매년 크게 성장 중

※ 시범구매 규모(억원) : (2019^{신설}) 24억원 → (2020) 293억원 → (2021) 445억원 → (2022) 465억원 → (2023) 483억원 → (2024) 530억원 → (2025) 529억원



참고 3

「공공조달개혁」 관련 업계 주요 의견

구 분	주요 의견	보완 방안
중기중앙회 (7.21.)	■ 가격 하방 압력 ■ 지방정부 공무원의 조달비리 및 지역기업 특혜 ■ 품질관리 문제 (저가, 저품질 초래) ■ 의무구매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하되, 업계와 충분한 논의 후 '자율화' 요청	■ 조달가격 합리화(제값주기) <9p> ■ 부패불공정조달 행위 감사 감독 강화 <4p> ■ 품질관리 강화 <11p> ■ 자율화 시범운영 <3p>
간담회 (9.24.)	■ 조달청과 각 지방정부별 조달기관간의 저가 경쟁 시 국내 중소기업들이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는 상황 초래 ■ 지방정부의 가격 하향 조정 요청에 따라 조달 단가는 지방정부 단가계약의 상한선이 됨	■ 품질관리 강화 <11p> ■ 컨설팅 등으로 자율구매 역량 강화 지원 <7p>
서면 건의 (9.24.)	■ 조달의무 폐지 시, 품질기준 미달의 중소기업 참여로 과열 경쟁 ■ 지방정부의 관내 업체 우선 요구로,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퇴보	■ 품질관리 강화 <11p> ■ 부패·불공정조달 행위 감사·감독 강화 <4p>
중기중앙회 서면 건의 (9.26.)	■ "의무구매 자율화"에 대신 현행 유지 필요 ■ 복수가격 형성(지방정부별 다른 납품가격)에 따른 시장혼란 ■ 납품가격 인하 경쟁(자율화 시, 조달단가 기준으로 가격 하방 압력) ■ 품질 저하(가격경쟁 심화로 품질관리 뒷전, 원재료·인건비 절감 압력) ■ 중복계약으로 행정부담 증가(조달청 및 각 지방정부별로 대응) ■ 지역 소재 특정업체 수주 집중(지역세력과 결탁한 불공정·불투명 계약)	■ 자율화 시범운영 <3p> ■ 조달가격 합리화(가격비교 검증/다각적 가격관리) <9p> ■ 조달가격 합리화(제값주기) <9p> ■ 품질관리 강화 <11p> ■ 조달가격 합리화(가격비교 검증/다각적 가격관리) <9p> ■ 부패·불공정조달 행위 감사 감독 강화 <4p>
국민생각함 (9.16.~9.24.)	■ 자율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 요청 (정착 시까지 혼란으로 중소기업 피해 우려) ■ 자율화하면 국가 예산 누수 절감	■ 자율화 시범운영 <3p> ■ 자율화 시범운영 <3p>